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2월 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추 미 애

●법률 제16920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 있는 때에는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등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